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2025. 9. 12.(금)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계약해지와 청소년의 보호, 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2025. 12. 31.日)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인력현황	운영법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상화로 420 (상인동) 상화로 406 (상인동)	4,124.88m ² (연면적) 6,353.93m ² (연면적)	27명 (관장 1명)	계명문화 대학교
청소년 상담복 지센터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	411.8m ² (연면적)	13명 (팀장 1명)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성서	계대동문로11길 33 (신당동)	276.67m ² (연면적)	7명 (센터장 1명)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성서센터 ·월배센터	서당로 30 (신당동) 학산로7길 39 (월성동)	358m ² (연면적)	8명 (팀장 2명)	
청소년쉼터		와룡로10안길 11 (본동)	529.96m ² (지상 4층)	9명 (소장 1명)	대구YWCA

나.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

-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
- 청소년의 상담활동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등 수련거리 발굴육성
- 청소년의 체력단련 및 능력개발
-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각종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개인·집단·전화·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 청소년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 청소년쉼터

- 가정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정상복귀 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활동
-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
- 집단상담,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
-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 기타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 3년(2026. 1. 1. ~ 2028. 12. 3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년(2026. 1. 1. ~ 2030. 12. 31.)
- 청소년쉼터: 5년(2026. 1. 1. ~ 2030.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의 계약해지(2025. 7. 8. 계약해지결정 통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은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탁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은 지하1층·지상 3층의 청소년수련관 건물과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중 지하1층, 지상1층, 야외시설 등을 관리하고, 관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직원이 청소년 활동·교육, 교양 강좌, 지역주민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상 2층의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과 지상 2층의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을 관리하면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직원이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인터넷 중독 상담프로그램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록학생 265명, 별도 인력 8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 청소년쉼터는 지상 4층의 청소년 쉼터 건물을 관리하고, 소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가출청소년과 위기가정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또한 각각 3년과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선정방식이 적법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운영실적 및 방법을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

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